

목 차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1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이를 관리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3월 17일

회 사 명 : HSD엔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고 영 열 (인)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신촌동)
(전 화) 055-260-6000
(홈페이지) <http://www.hsdengine.com>
내부회계관리자 : 부사장 (성명) 김관식
(전 화) 055-260-6007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2002-02-08
제9차 개정 2021-02-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지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HSD엔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운영 목적),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재무 보고 목적),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법규 준수 목적) 등 목적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회계 정보의 관리

제4조 (회계 정보 처리의 일반 원칙)

회계 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 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상기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5조 (회계 업무의 처리)

① 회계 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 방법 및 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적절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 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5조에 의한 점검 및 제16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 (회계기록의관리·보존)

-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직

제8조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 ③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2조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내부회계관리자)

-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제9조의2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임면 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이사
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 (기타 임직원)

① 회사 내 특정 기능 또는 사업 단위를 책임지는 임원 및 팀(부서)장은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회사 전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책임지는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 팀(부서)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에 대한 유지 및 변경에 대하여 직접적 인
책임을 지며 자가 진단을 수행하고 발견된 예외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회사 임직원은 내부회계관리자(업무에 관하여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업무상 요청
하는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사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회사 임직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업무처리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 를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즉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 분장 및 책임)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및 임직원의 업무를 적
절히 분장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 분장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2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 전
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
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 물위
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 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의2 (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13조 (임직원교육)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 직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

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의2에서 정한 보상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제14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회계관리 지침'에서 정한다.

제15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지침'에서 정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대표이사가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4.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16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 평가 결과는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7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 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 보고서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 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5장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제18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인사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19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0조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내부신고제도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규정의 제·개정)

- ① 이 규정의 제·개정은 사규 관리부서가 입안하고 내부회계관리자가 발의한 후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2021.2.8	제2장 회계 정보의 관리 제4조 (회계정보 처리의 일반원칙) 회계 정보의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 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상기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2장 회계 정보의 관리 제4조 (회계정보 처리의 일반원칙) 회계 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 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상기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른다.	- 표준규정 제4조를 반영하여 처리 원칙 명확화
	제12조의2(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행 평가 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행 평가 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표준규정 제13조 및 외감법시행령 9조 2항 5호 반영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를 수행한다. 단, 2019년까지는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회계관리 지침'에서 정한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를 수행한다. <일부삭제> ② 제1항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회계관리 지침'에서 정한다.	- 규정 개정으로 불필요한 용어정의 삭제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홍성표	감사위원회 위원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행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 내부회계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행 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사외이사	-

이사회	정승원	이사회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 보고 - 회계 관련 조직 부서별 관리·운영 책임자 지정 - 회계 처리 내역 정기 점검, 통제, 회계 정보 적정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 회계 관련 부서 임직원의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규정 사내·외 정기교육 실시 	대표이사	055-260-6000
내부회계 관리자	김관식	내부회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처리 내역 정기 점검, 통제, 회계 정보 적정성 검토 - 회계 관련 부서 임직원의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처리 규정 사내·외 정기 교육 실시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점검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검 총괄 - 기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업무 - 대표이사 위임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	055-260-6007
내부통제부서	양상락	내부통제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 규정/지침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문서관리 	-	055-260-6105
회계처리부서	김현곤	회계관리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내용 회계 처리 및 장부 기록 -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작성 - 회계 전표 및 장부 관리·유지 - 회계업무처리 규정 수립 및 변화관리 - 회계업무 처리 규정 적용 및 관리 감독 	-	055-260-6662
전산운영부서	권철상	전산운영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전산장부 보존 	-	055-260-8429
자금운영부서	정인태	자금관리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조달 및 운용 	-	055-260-6097
인사담당부서	이동걸	인사담당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징계 관련 인사 규정 관리리 	-	055-260-6104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4	4	1	25.0%	189
이사회	10	10	1	10.0%	112
회계처리부서	8	8	-	0.0%	90
전산운영부서	5	2	-	0.0%	98
자금운영부서	7	5	1	20.0%	58
내부통제부서	5	4	-	0.0%	66

$$* \text{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frac{\text{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text{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관리자	김관식	055-260-6007	등록완료	2년 6개월	27년 9개월	-	7시간
회계담당임원	김관식	055-260-6007	등록완료	2년 6개월	27년 9개월	-	7시간
회계담당직원	김현곤	055-260-6662	등록완료	10년 4개월	20년 11개월	16시간	36시간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고
2021.3.25(예정) (주주총회)	대표이사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주주총회	
2021.2.8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HSD엔진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2021년 2월 8일

대 표 이 사

고 영 열



내부회계관리자

김 관 식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고
2021.3.8	감사위원회 위원장	<p>본 감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p> <p>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p> <p>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p> <p>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p> <p>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p> <p>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p> <p>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p>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HSD엔진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3월 8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성표



위 원 이계연



위 원 김철



위 원 김동희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안진회계법인)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p>	<p>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HSD엔진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p> <p>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p> <p>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1년 3월 15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p>	-	-	-
기타 내부회계제도관련 의견	-	-	-	-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HSD엔진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HSD엔진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물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1년 3월 15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당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감사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획득과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안종민입니다.

Deloitte.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洪 鐘 聲 

홍 종 성

2021년 3월 15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3월 1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